2026

수의사 등 축산물위생관리법

엠북 농수산법규



- ↑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↑ 법, 시행령/시행규칙(일부) 종합
- ↑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- ★ 1시간 8분 완성

도서명 : 축산물위생관리법 ISBN : 979-11-7393-088-1

형식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: 엠북 출판사: 엠북 홈페이지: https://www.mbook.kr/ 이메일: by4782@gmail.com

정가: 7,000원

발간일:2025-10-10

축산물위생관리법
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/규격(p11)

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(p17)

제4장 검사(p36)

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(p53)

제6장 감독 등(p97)

제7장 보칙(p104)

제8장 벌칙(p111~120)

[약어]

<u>처장</u>은 식품의약품안전<u>처장</u> <u>시도지사</u>는 특별<u>시</u>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<u>도지사</u>, 특별자치도지사 <u>시도</u>는 특별<u>시</u>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 <u>시군구</u>는 <u>시</u>장, <u>군</u>수, 자치<u>구</u>의 구청장 또는 시, 군, 자치구 <u>시군구</u>등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<u>시군구</u>

<u>처장</u>등은 <u>처장</u>, 시도지사, 시군구

<u>사유없이</u>는 정당한 <u>사유</u> 없이

<u>추적정보</u>는 이력<u>추적</u>관리<u>정보</u>

<u>가공품</u>은 축산물<u>가공품</u>

거부등은 거부, 방해, 기피

<u>자체기준</u>은 <u>자체</u>안전관리인증<u>기준</u> 기준등은 <u>기준</u>,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<u>기준/규격</u>은 가공<u>기준</u>, 성분<u>규격</u>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(대통령령)

갈색은 시행규칙(총리령)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3조

1. 목적

-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가축 사육/도살/처리, 축산물 가공/유통,

검사에 필요한 사항 정함

-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

2. 정의

가. 가축

- <mark>소</mark>, <mark>말</mark>, <mark>양</mark>(염소 등 산양 <u>포함</u>), <mark>돼</mark>지(사육 멧돼지 포함), <mark>닭</mark>, <mark>오</mark>리
- 스케<u>스 포르</u>가 <mark>라, 포</mark>디 - 식용 사슴, 토끼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
- <u>식용</u> 사슴, 토끼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 당나귀

나. 축산물은 <mark>식</mark>육, <mark>포</mark>장육, <mark>원</mark>유, <mark>식</mark>용란, <mark>식</mark>육가공품, <mark>유</mark>가공품, <mark>알</mark>가공품

1) 식육은 식용 목적 가축의 지육, 정육, 내장,

- 그 밖의 부분

 2) <u>포장육</u>은 판매(불특정다수인에 무료 제공
 <u>포함</u>)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(세절, 분쇄
 <u>포함</u>)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/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 첨가안함
- 3) <u>원유</u>는 판매, 판매 위한 처리/가공 목적

착유 상태 우유와 양유 - 집유는 원유 수집, 여과, 냉각, 저장

- 4) 식용란은 식용 목적 닭, 오리, 메추리 알

- 5) <u>식육가공품</u>은 판매 목적 햄류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건조저장육류, 양념육류, 식육을
- 원료로 해 가공한,
- (햄버거패티, 미트볼, 돈가스 등)
- 분쇄가공육제품
- 갈비가공품
- 식육추출가공품
- 식용 우지(쇠기름)
- 식용 돈지(돼지기름)

- 식육간편조리세트
- 6) <u>유가공품</u>은 판매 목적 우유류,

버터류, 치즈류, 원유 등을 원료로 해 가공한,

저지방우유류, 분유류, 조제유류, 발효유류,

- 무지방우유류, 유당분해우유, 가공유류,

산양유, 버터유류, 농축유류, 유크림류, 유청류, 유당,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, 아이스크림류,

아이스크림분말류, 아이스크림믹스류

7) <u>알가공품</u>은 판매 목적 난황액, 난백액, 전란분, 알을 원료로 해 가공한,

- 전란액, 난황분, 난백분, 알가열성형제품,

염지란, 피단

다. 작업장은 도축장, 집유장, 축산물가공장, 식용란선별포장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보관장

라. 기립불능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함

마.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(이하 추적관리)는

- 가공품(식육가공품, 유가공품, 알가공품)
-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
- 기록/관리해,
- 안전성 등 문제 발생시 가공품 이력을
- 추적해 원인 규명과 조치 할 수 있게 함

3. 다른 법률과의 관계

- 축산물에 관해 법에 규정 없으면

<u>식품위생법</u> 따름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/규격

3조의2~5조

1. <u>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</u>(이하 <u>위원회</u>)의

설치 등

가. 설치

1) 처장 자문에 응해 축산물 위생 주요 사항

-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, 오염 방지 - 항생물질, 농약 등 유해성 물질 잔류 방지 기술지도, 교육 - 가공/포장/보존/유통 기준, 성분 규격 - 안전관리인증기준 - 수입/판매 등 금지 - 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나. 구성 1) 위원장/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위원 30~50명 - 공무원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

등 조사/심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둠

2) 조사/심의 사항

a) 축산물 위생이나 소비자 보호 학식/경험 풍부한 자나 축산물 영업 종사 자 - 위촉시 학회, 전문가 단체 등 추천 받을 수 있다 b) 축산물 위생관리, 가축 방역, 축산물

2)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, 부위원장은

3) 위원은 다음 중 처장이 위촉/임명

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

생산/유통 담당 공무원

3) 위원 임기 2년

다. 운영: 위원회에, -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분야별

-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 재직 기간

분과위, - 축산물 국제기준, 규격 조사/연구를 위해 연구위원 둘 수 있다 2. 축산물의 기준과 규격

가. 가축 도살/처리, 집유 기준은 총리령

나. 처장은

1) 공중위생상 필요시 축산물에 대한 다음

사항 고시 가능 - 가공/포장/보존, 유통 방법에 관한 기준(이하

가공기준)

- 성분에 관한 규격(이하 성분규격)

2) 기준/규격 미정 축산물에 대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 가공/규격을 제출하게 해 축산물 시험/검사기관 검토 거쳐 기준/규격 고시 전까지 한시 인정 가능 다. 가축 도살/처리, 집유, 축산물 가공/포장/보존/유통은 상기 기준등 따라야 함 - 판매 목적 수입 축산물도 같다 라. 상기 기준등에 맞지 않는 축산물은 판매, 판매 목적 보관, 운반, 진열못함 마. 처장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거짓,

-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

부정한 방법으로 기준/규격 인정 받은 때 이를 취소 요

바. 수출 목적 축산물의 기준등은 수입자 요구에 따를 수 있다

3. 용기등의 규격 등

- . - 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

축산물 <u>용기등(용기, 기구, 포장, 검인용/인쇄용</u> 색소) 규격 등 고시 가능

<u>색소</u>) 규격 등 고시 가능 - 규격 등이 정해진 때 이에 적합한 용기등

사용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

가. 가축 도살/처리, 집유, 축산물

7~10조

1. 가축의 도살 등

가공/포장/보관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함 (예외)

- 1)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살/처리
- 도살/처리한 자는 시도지사에 신고 - 도살/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식용으로 사용,
- 판매 가능
- 2) 시도지사가 소/말을 <u>제외</u>한 가축 종류별로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하기

위해 도살/처리 3) 시도지사가 소/말/돼지/양을 제외한 가축

종류별로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 직접 조리해 판매(이하 자가 조리/판매)하기 위해, 처장 고시에 따라 위생적으로, 도살/처리

나. <mark>부</mark>상, <mark>난</mark>산, <mark>산</mark>욕마비, 급성고창증 이외 원인으로 기립불능된 가축을 도살/처리해 식용, 판매못함

- 국가/지자체는 질병검사 후 폐기처리하고,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

다. <u>사슴</u>을 자가소비나 자가 조리/판매 하기

위해 도살/처리시 시도지사, 시군구에 도살/처리하는 가축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 검사 요청 가능 - 시도지사,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임명/위촉한 검사관에 검사 하게 함 라.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합격표시

- 예외) 검사 요청한 자가 합격표시 원하지

2. 위생관리기준

않는 때

가) <u>영업자(허가 받거나 신고 한 자</u>), 종업원이

나) <mark>도</mark>축업, 축산물<mark>가</mark>공업, 식육<mark>포</mark>장처리업,

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,

집유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축산물보관업,

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

따라 작업장, 업소에서 영업자과 종업원이

총리령으로 정함

작업장,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은

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/운영 요 - 예외) **안전관리인증작업장**(이하 **인증작업장**), **안전관리인증업소**(이하 **인증업소**)로 인증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

3. 안전관리인증기준(이하 안전기준)